



##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

[시행 2021. 7. 1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188호, 2021. 7. 1., 타법개정.]

보건복지부(의료인력정책과), 044-202-2436

### 1.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

| 구분<br>과목 | 인정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레지던트<br>수련인정 연한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내과 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외과       | 정형외과, 신경외과, 흉부외과,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소아청소년과   | 내과,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산부인과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정신건강의학과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정형외과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신경외과     | 외과, 정형외과, 신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흉부외과     |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성형외과     |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안과 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미비인후과    | 외과, 정형외과, 신경외과, 흉부외과,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피부과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비뇨의학과    | 외과, 정형외과, 신경외과, 흉부외과, 산부인과, 성형외과, 내과, 마취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영상의학과    | 핵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방사선종양학과  | 4년 과정의 타과(3년 과정의 결핵과, 예방의학과, 가정의학과 제외)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마취통증의학과  |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정형외과, 신경외과, 흉부외과, 성형외과, 안과, 미비인후과,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또는 수련이수자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신경과      | 내과, 소아청소년과, 정신건강의학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재활의학과    | 내과, 소아청소년과, 정형외과, 신경외과, 신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결핵과      | 1. 내과, 소아청소년과,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<br>2. 내과, 소아청소년과, 흉부외과 수련 이수자                       | 1. 2년 인정<br>2. 1년 인정 |
| 진단검사의학과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병리과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예방의학과    |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가정의학과    | 내과, 소아청소년과,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응급의학과    |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정형외과, 신경외과, 흉부외과, 성형외과, 비뇨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신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| 핵의학과     | 내과,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인정                |

주 1) 전문의 자격 취득자 :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

- 2) 수련 이수자 : 해당과의 전체 수련기간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
- 3)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: 레지던트 수련의 최대 인정 기간을 의미하며, 2개과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각 과별로 정한 인정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

## 2. 재검토기한

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부칙** <제2021-188호, 2021. 7. 1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